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수주 실적 신고 의무 규정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06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수주실적 신고 의무 규정 신설 ····· 3

2.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정보 제공 근거 신설 ····· 10

3.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및 디지털화 지원 ····· 12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수리기한 연장 및 수리간주 ····· 16

5.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조사 ····· 24

6. 처분절차 진행 중인 자와 영업정지 중인 자의 폐업신고 제한 ····· 27

7. 사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 조정 등 ····· 30

8.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간주제도 폐지 ····· 37

9. 엔지니어링사업의 표준품셈 근거 명확화 및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 39

10. 수수료 규정 정비 ····· 48

11. 과태료 규정 정비 ····· 51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주실적 신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수주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는 경우 수주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受注)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의 신고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연구·설계·시험·감리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업무내용의뢰를 받아 그 활동을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수주산업으로[1], 2024년 기준 건설·환경·전기·정보통신 등 15개 기술부문, 48개 전문분야 관련 8,76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표 1] 엔지니어링 분야별 업체 수 및 수주실적

(단위 : 억원)

기술부문	전문분야	업체수('24)		수주실적 ('24)
		개	구성비	
기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300	3.4%	2,244
선박	조선	67	0.8%	365
항공우주	항공	2	0.0%	-
금속	금속	8	0.1%	7
전기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715	8.2%	7,215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1,390	15.9%	6,567
화학	화공	44	0.5%	2,217
광업	자원관리, 광해(광산피해)방지	3	0.0%	15
건설	도로·공항 등 13개	4,463	50.9%	70,275
설비	설비	282	3.2%	5,632
환경	대기관리 등 5개	361	4.1%	9,828
농림	농림, 시설원예	715	8.2%	876
해양·수산	해양	186	2.1%	1,462
산업	생산관리 등 9개	69	0.8%	2,050
원자력	원자력·방사선 관리, 비파괴검사	160	1.8%	4,398
계	**15개 기술부문, 48개 전문분야**	**8,765**	**100%**	**113,15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등

현재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산업과 관련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2], 엔지니어링 산업 일반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상 발주청의 통보 또는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실태조사[3] 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4] 등 간접적인 권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을 받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임의로 엔지니어링 실적을 제출받고 있는 상황으로,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출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66.4%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수주실적을 신고하고 있음.

[표 2] 엔지니어링사업자 수주실적 신고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엔지니어링 사업자	6,878	7,080	8,203[5]
수주실적 신고 사업자	4,488	4,646	5,447
수주실적 신고율	65.3%	65.6%	66.4%

*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주실적의 통보 또는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엔지니어링 산업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현황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수주 실적 자료가 공공 발주처 및 민간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자의 수주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등록업체 중 폐업 등 미영업업체 제외

다만, 수주실적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외건설 촉진법」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관련 수주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하고 있고[6],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7]

개정안과 같이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통보·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적 업무범위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이 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청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의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8]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표 3] 현행법령상 수주실적 통보체계

소관	사업분야	발주청	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일반 (건설 엔지니어링 포함)	-	- (신고 의무)
국토교통부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포함)	통보 의무	통보 허용
	해외건설공사사업	-	통보 의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업	-	보고 의무

업체 수 기준 전체 엔지니어링 업체 중 50.9%를 차지하며, 수주금액 기준 전체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실적 62.1%를 점유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을 기준으로 볼 경우,

일반 엔지니어링 사업 수주 시 발주청만 통보의무를 지고, 임의적으로 통보가 가능하지만, 특수분야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수주 시 직접 통보할 의무가 부여됨.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보다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사업 일반에 대해 직접 신고의무를 부과받게 되어 복수의 주무부서에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한편, 일반분야 사업 일반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3항에 따르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9],

발주청의 정보제공이 아닌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주 실적을 공적인 문서로 확인하게 됨에 따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체 신고에 대해 부처가 실적 확인서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와의 형평성 및 기존 법체계 구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사업자의 엔지니어링 수주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임의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9) 개정안 제7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정보 제공 근거 신설(안 제8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생 략)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 략)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수주 실적---------- 3. ~ 6.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중 상당수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 부담 없이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시행령 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2년부터 조달청 협의를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체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사업자의 수주실적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및 디지털화 지원 (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분석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며(안 제8조의2),

정부가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분석·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

	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기획·설계·분석 등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산업[11] 특성과 주요국 대비 엔지니어링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 4] 주요국 엔지니어링 기술력 및 생산성 비교

구분	상대수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기술수준	100	93.3	90.0	83.2	74.9
·기본설계	100	91.7	88.1	83.1	73.9
·PM	100	93.2	90.7	83.6	75.5
생산성	2.04	-	1.25	1.00	0.39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3년 엔지니어링산업백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236억원 투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현재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eng.com)”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 정보 분석서비스,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엔지니어링 AI 분석 지원플랫폼, 엔지니어링 공공 데이터셋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설계, 운영·관리 등 관련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므로 지원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12],

이를 근거로 예산사업으로 기구축된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수리기한 연장 및 수리간주 (안 제21·23조)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중요사항 변경·휴업·폐업 등에 따른 신고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한편(안 제2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업·중요사항 변경·휴업·폐업 등에 따른 신고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1조제3항·4항, 안 제23조제3항·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60일----------. ③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 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신고사항 중 상당수는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며[13], 기술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항을 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행상 대체인력 채용 후 퇴직 및 채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하고 있는 데,

이 때 대체인력 채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또한 엔니지니어링사업 중 한 부문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14]을 고려할 때,

현행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허용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20970호, 2025.8.28. 시행) 시행에 따라 중요사항 변경과 휴업 및 폐업에 대하여 별도의 호에서 규정하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 개정안 제출시 시행법과 현행법 비교

제출시 시행법	현 행 법(2025.8.28. 시행)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출시 시행법과 같음)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개정안의 취지가 기술인력 퇴직 시 등에 있어서 신규인력 채용 등 후속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는 데에 있고, 휴업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속한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기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변경시 3개월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휴업·폐업의 경우 1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15]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현행법과 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신고)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표 6] 현행법과 수정의견 비교

현 행 법(2025.8.28. 시행)	수 정 의 견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출시 시행법과 같음)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법과 같음) ② ----------. 1. ----------: ---------- 60일 이내 2. (현행법과 같음) 3. (현행법과 같음)

한편, 동법 상 중요사항 변경·휴업·폐업 등에 따른 신고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는 법문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증을 교부하는 등 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16],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함[17].

16) 엔지니어링산업 진행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8.

이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에도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 수리간주규정을 두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자유 보장과 행정청의 적극행정 독려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18].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고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 수리간주 규정 도입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 수리간주규정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리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영업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임[19].

18)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방안」, 2017.9.
1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8.

[표 7] 신고에 대한 수리통지 및 수리간주 기한

법률	영업	수리통지 및 수리간주 기한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신고어업	5일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기수입업	7일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업	10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처리시설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제작업	15일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업**	**30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영업의 자유 보장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30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도과 시 수리로 간주하도록 한 것[20]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통지 및 간주 기한을 개정안의 15일에서 30일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조사 (안 제21조의2)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신고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된 행위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법령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등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어서[21] 이와 같은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할 집행수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건설기술 진흥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22]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무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입조사권의 대상장소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일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출입·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실시된다고 할 것이나 그 결과가 형사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23]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등[24]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국민의 주거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의 대상장소를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8] 출입·조사 대상장소 관련 입법례

법률	영업	비고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관련시설”	“관련시설”로 한정
「건설기술 진흥법」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	“등”으로 예시
「대기환경 보전법」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사업장, 사무실 등”	
「환경영향평가법」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추가

23) 동법 위반 시 동법 제46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24) 대법원 2017.7.18.선고 2014도8719판결

6. 처분절차 진행 중인 자와 영업정지 중인 자의 폐업신고 제한 (안 제22조)

개정안 제22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 자와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신고의 제한) (생 략) <신 설>	제22조(신고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법은 효력상실처분과 영업정지명령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25].

반면 폐업신고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효력상실처분이나 영업정지명령을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효력상실처분이나 영업정지명령을 면탈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이어 사업자신고를 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절차 중에 있는 자와 영업정지명령기간 중인 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

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처분절차 중에 있는 자와 달리 영업정지명령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사업신고가 불가능함.

[표 9] 처분절차 중에 있는 자와 영업정지 명령 확정된 자 비교

	현행법	개정안	수정의견
처분절차 중	폐업 가능 즉시사업 가능	폐업 불가 처분에 따른 기간 후 사업	폐업 불가 처분에 따른 기간 후 사업
영업정지기간 중	**폐업 가능 영업정지기간 후 사업 가능**	**폐업 불가 영업정지기간 후 사업 가능**	**폐업 가능 영업정지기간 후 사업 가능**

신규사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업정지로 영업계속의 의사가 없는 사업자에게까지 폐업신고를 제약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절차 중에 있는 자에 한정하여 폐업신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20970호, '25.8.28.시행) 시행에 따라 조문구조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7. 사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 조정 등

(안 제25조)

개정안 제25조는 사업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가 현행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승계되던 것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하고(안 제1항),

승계인에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지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처분일부터 1년간----------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② ----------양수인등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양수인등이----------.
<신 설>	③ 양수인등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가. 행정처분효과 적용기간 조정

현행법령 상 효력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6] 영업정지 또는 효력상실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있어[27]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효력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간 동법 적용에 있어 불이익처우를 적용받게 됨.

그러나 사업양도·사망 또는 합병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경우 현행법 상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불이익처우의 효과를 승계받게 됨에 따라

사업양도·사망 또는 합병이 없었던 경우와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적용받는 한편, 사업양도 또는 합병 등을 통해 불이익 처우를 면탈할 우려가 있음.

사업양도·사망 또는 합병이 없이 사업자가 유지된 경우와 사업양도·사망 또는 합병에 따라 승계받은 경우를 원칙적으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나. 행정처분 절차중 또는 이력확인의무 및 관련 서류발급

현행법 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선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8].

이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선의임을 증명하면 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되나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처분계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청 입장에서는 선의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어려워서 선의의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에게는 불측의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한편, 악의의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에게는 제도 악용의 여지를 주는 측면이 있음.

---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효과승계와 관련하여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선·악 입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음[29].

개정안은 승계인에게 피승계인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이력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 보호받는 선의의 승계인에 상속인 포함 여부

현행법 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선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30]

29) 국민권익위원회,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2023.7.10. 2023-612.

3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

처분 절차는 양수인·합병법인 및 상속인에 대해 승계되도록 하되,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이 선의를 증명하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5조제1항서 양수인·합병법인 및 상속인을 "양수인등"으로 포괄하여 정의함에 따라, 해석상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의를 증명하는 경우 그 적용의 예외를 인정된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소지가 있음.

영업양도·양수는 개인 간의 양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합병법인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간의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계약 당시 처분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그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상속의 경우 개개인 간의 계약과 관계없이 사업자인 개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사망 당시 처분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인의 경우 선의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문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 역시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 선의의 승계 보호 대상에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31].

31) 국민권익위원회,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2023.7.10. 2023-612.

8.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간주제도 폐지 (안 제26조제2항 삭제)

개정안은 현행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

현행법 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업개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한편[32],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도로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음[3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와 달리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가 임의적인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자 신고가 소극적일 것을 우려하여 기술자 신고 제도 시행 당시[34] 사업자 신고 시 소속 기술자 신고 간주규정을 함께 입법하였음.

현재 기술자 신고제도 시행 15년 차를 맞아 기술자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기술자 현황 등 관리를 위한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달성된 한편, 기술자 본인의 신고와 사업자 신고에 따른 신고간주가 중복되는 경우 자료관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기술자 신고 간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33)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4) 법률 제10250호, 2010.4.12. 전부개정

9. 엔지니어링사업의 표준품셈 근거 명확화 및 발주청의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안 제31조)

개정안은 현행법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것을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으로 수정하여 표준품셈이 대가산정 필요기준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가 산정기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⑥ ----------제5항----------.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

가. 엔지니어링사업의 표준품셈 근거 명확화 (안 제31조제2·3항)

“품셈”이란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으로,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관리기관이 공표한 품셈을 의미함[35].

현행법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하며[36],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 위탁을 통해 표준품셈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인하고 있음[37].

개정안은 이와 같이 법령 해석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표준품셈”과 관련하여 법률 상 명문의 근거를 두는 한편, 실무상 대가산정기준 등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

3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조(정의)

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6조(관리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7조에 따른 표준품셈의 인가,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략)

표준품셈은 실무상 발주청이 사업대가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기준근거로써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적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표준품셈 산정 업무위탁[38] 및 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전기공사업법」[39], 「건설기술진흥법」[40], 「정보통신공사업법」[41] 등 유사법률례에서도 각 소관 장관이 “표준품셈” 등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8) 2017년 이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을 표준품셈관리연구원으로 지정·운영

39)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40)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4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안 제31조제4항)

현행법 상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42][43] 한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에 어느 정도 단가를 적용하여 발주금액이 나왔는지와 관련하여 대가 산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발주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입찰공고시 산출내역서를 공개하기도 하는 한편[44] 그와 같은 내부지침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별로 재량에 따라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음[45].

---

4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44)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입찰공고시 첨부서류로 산출내역서(공내역서)를 공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24년도 지방계약실무매뉴얼」)

45) '25.3.1.~3.31.까지 토목설계 발주된 입찰공고 100건을 임의조사결과 14%에 대해서만 대가 산출내역 공개

현재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시 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의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해 입찰 시 대가가 포함된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함.

그런데, 발주청이 사업에 대한 정보로 사업비 총액과 과업지시서만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부적인 과업 내용이나 인원투입 규모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해당 사업에 적정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누락 과업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입찰금액 및 내용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의 적정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른 공사비 요율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액이 결정되는 한편,

입찰 공고 단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른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라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직접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 실제 소요경비를 추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공사비 요율방식”은 공사규모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경우에 따라서 양 방식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은 공사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3,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하천 공사의 경우 기재부 요율이 산자부 요율의 151%에 달하고, 반대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상수도 공사의 경우 그 54%에 불과한 등 현 시점에서 예산편성단계와 발주단계에 가액산정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임.

[표 10] 건설분야 산업부 요율 대비 기재부 요율 수준 비교

구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5천만원까지	89%	109%	82%	95%	104%	147%	88%	83%	117%
1억원까지	84%	103%	79%	90%	99%	139%	84%	79%	110%
2억원까지	71%	86%	67%	76%	83%	115%	71%	67%	92%
3억원까지	67%	81%	63%	72%	78%	106%	66%	63%	86%
5억원까지	62%	75%	59%	67%	72%	99%	62%	59%	80%
10억원까지	57%	68%	54%	61%	66%	89%	57%	54%	73%
20억원까지	59%	68%	56%	63%	68%	87%	59%	56%	76%
30억원까지	61%	69%	57%	64%	69%	87%	60%	57%	78%
50억원까지	64%	72%	60%	67%	73%	88%	63%	60%	82%
100억원까지	69%	75%	65%	72%	78%	90%	68%	65%	89%
200억원까지	73%	78%	70%	76%	83%	92%	73%	69%	97%
300억원까지	77%	81%	73%	80%	88%	94%	77%	72%	102%
500억원까지	81%	83%	77%	83%	92%	95%	81%	76%	109%
1,000억원까지	88%	89%	84%	91%	100%	98%	88%	83%	120%
2,000억원까지	96%	93%	93%	99%	109%	101%	97%	91%	133%
3,000억원까지	101%	97%	98%	103%	114%	102%	101%	95%	140%
5,000억원까지	107%	101%	104%	108%	122%	105%	109%	102%	151%

* 기재부 지침 공사비요율 ÷ 현행 산업부 고시 공사비요율로 계산하여 산출
(기재부 요율이 산업부 요율보다 낮은 구간은 파란색, 높은 구간은 붉은색으로 표기)

이와 같이 발주청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대가산정 소관 부처 간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사업 성질과 규모를 구별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실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조달청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이견을 해소한 후에 의무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사업대가 산출 투명성 제고 필요성과 예산 산출기준과 발주가액 산출기준이 다른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주청이 산출 가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가격산출기준에 대한 조정과 합의 및 그에 따른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 수주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신고·변경신고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5조(수수료) ----------.
<신 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법상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신고·변경신고와 지위승계신고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자와 관련해서는 기술경력증 발급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46].

4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관련 수주 실적 확인서 발급과 엔지니어링기술자 관련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표 11]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지위취득	사실증명
사업자	사업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개정안) 사업수주실적확인서 발급
기술자	(개정안) 신고・변경신고	기술경력증 발급

현행법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위취득과 관련된 사업신고・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술자에 대해서 사실증명에 해당하는 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수주실적을 확인하게 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증명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 정착에 따라 기술자 신고간주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그간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촉진을 위해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던 것을 신고 및 변경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

[표 12] 현행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		단위	수수료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규신고	개사	50,000원
	전문분야 신고	개	50,000원
	변경신고(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건	30,000원
	휴업 · 폐업 신고	건	0원
	재개업 신고	개사	50,000원
	지위승계 신고	건	50,000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 경력증 발급	부	8,000원

개정안 내용에 따라 사업자 관련 사실증명에 대해서도 사업수주실적 확인이 가능하게 된 점, 현재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11.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8조)

개정안은 현행법 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48조)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③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휴업신고를----------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조사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이행강제수단이 필요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과태료를 규정하는 예[47]가 상당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조사권 신설과 함께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연간 20여건 발생 중임.

[표 13] 연간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 현황(최근 3개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폐업 건수	120	104	93
폐업 신고 건수	96	82	67
폐업신고율(%)	80.0	78.8	72.0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00만원 이하 과태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을 하면서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 신고내역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말소하고 있어 연중 폐업사실과 신고사실이 일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